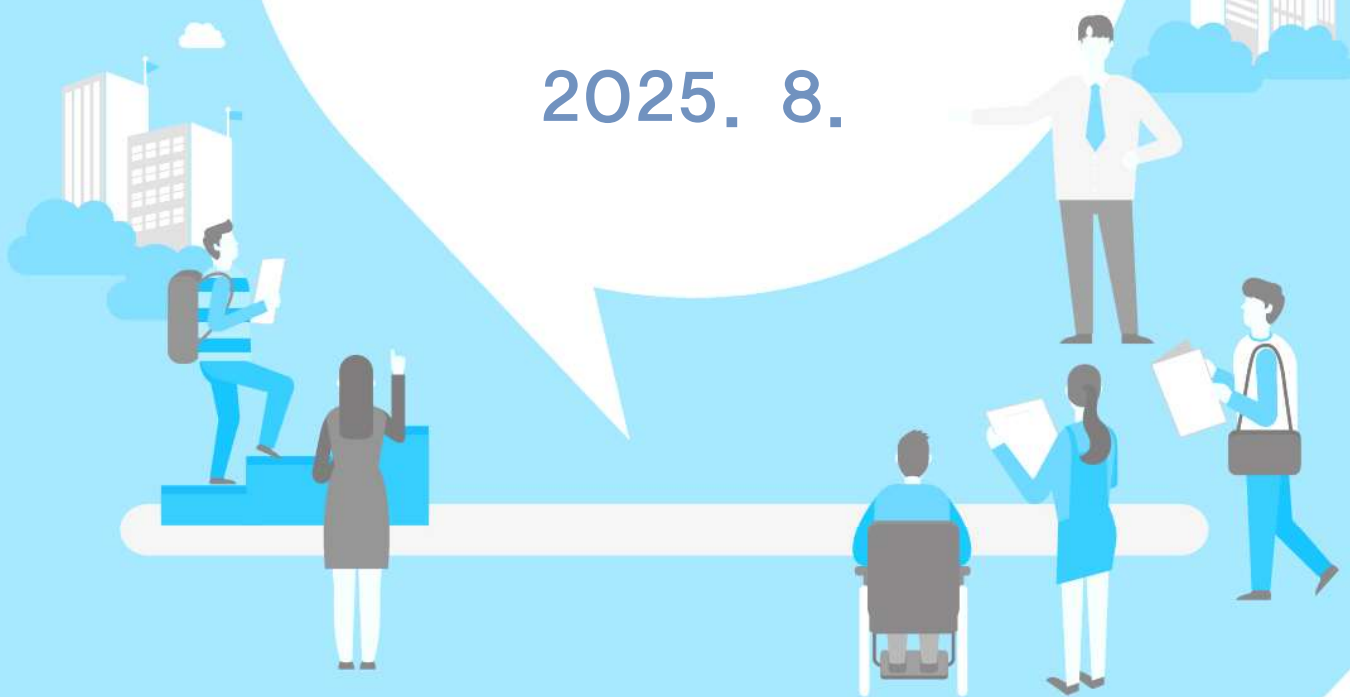


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

2025. 8.





I.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

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	1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

사업주 지원

II.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1. 고용유지지원금	5
2.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	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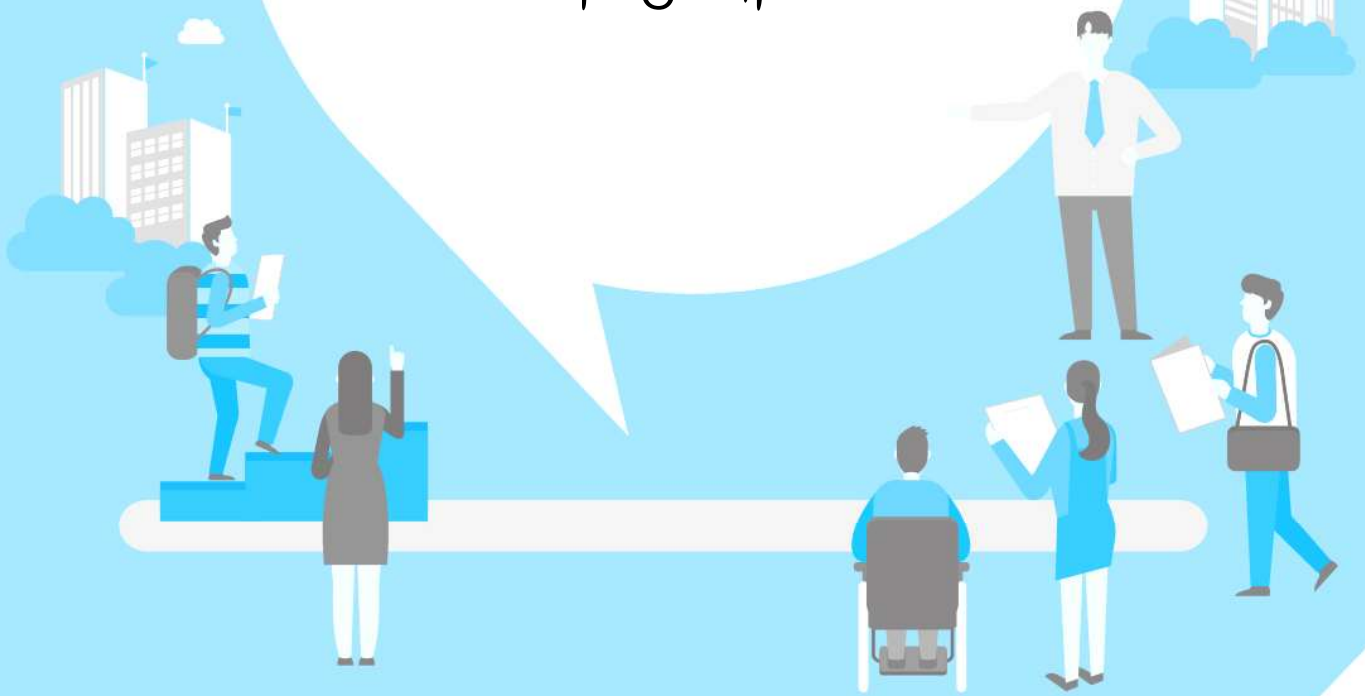


근로자 지원

III. 근로자(재직자·퇴직자)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
3. 국민취업지원제도	10
4. 국민내일배움카드	11
5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	12
6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	13
7.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	15

I .
고용위기
선제대응지역
지정제도





1 — 제도 개요

-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

* 근거 법령: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 및 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46호, 2025. 7. 31.)

2 — 지원 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지역*에 있는 사업주, 근로자(퇴직자), 구직자 등
- *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·산업·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시로 지정함

3 — 지원 내용

분류	지원 내용
고용유지	•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• 사업주 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지원수준 확대
전직지원	•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및 자부담률 인하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소득요건 완화
생계안정	•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, 생활안정자금 융자,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의 대부한도 인상

4 — 지정 절차

- ❶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
- ❷ 지역 주민, 고용·노동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(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)
- 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신청
- ❹ 고용정책심의회 심의·의결
- ❺ 지정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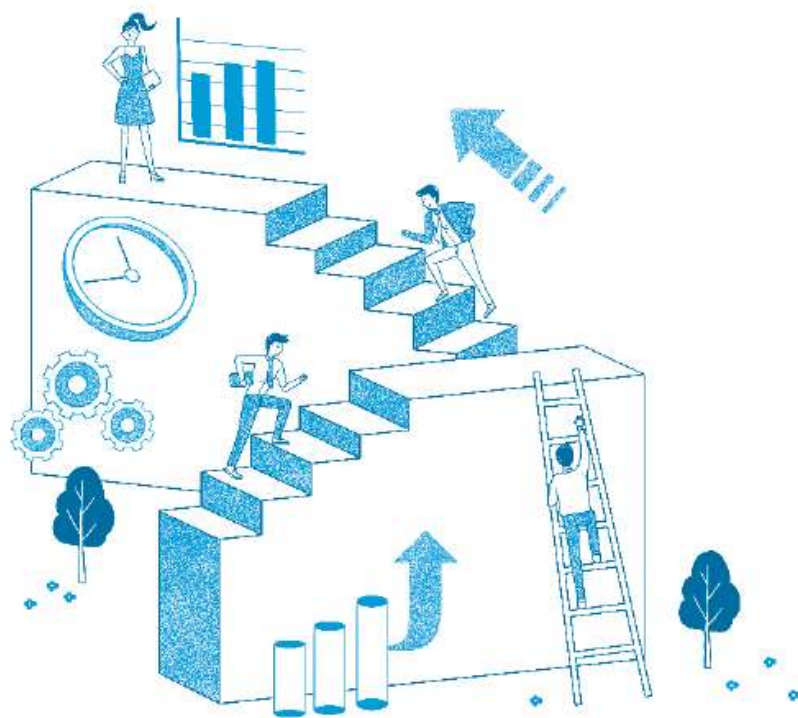
* 구체적인 소요일정 등은 진행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5 — 지정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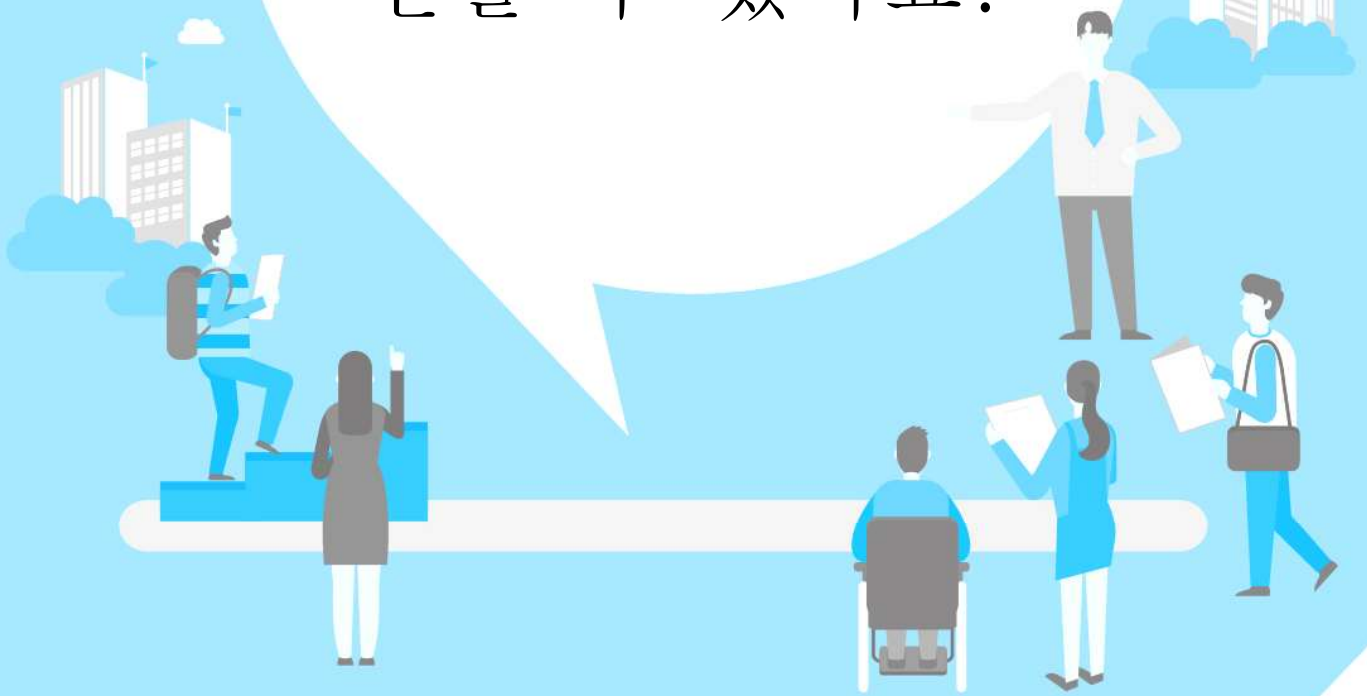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정
 - * 지정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 해제 가능

6 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

- 전라남도 여수시, 광주광역시 광산구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52호, 2025. 8. 28.)
 - * (지정 기간) '25.8.28. ~ '26.2.27.



Ⅱ.
사업주는
어떤 지원을
받을 수 있나요?





1 — 지원 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

2 — 지원 내용

- 유급휴업*, 유급휴직**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

* 사업주가 역(曆)에 따른 1개월 단위 기간 중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, 그 단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

**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별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,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

기업규모	일반	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
우선지원대상기업	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2/3	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8/10
대규모기업	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1/2	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6/10 (단,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이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50% 이상인 경우, 휴업·휴직수당의 7/10)

3 — 신청방법 및 절차

- (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)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(사업주 → 고용센터)
→ 휴업·휴직 실시(사업주) → 매월 지원금 신청(사업주 → 고용센터)
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 → 사업주)

4 — 참고사항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」의 지정기간 중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적용
- ❷지원내용의 우대지원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

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
2

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



1 — 지원 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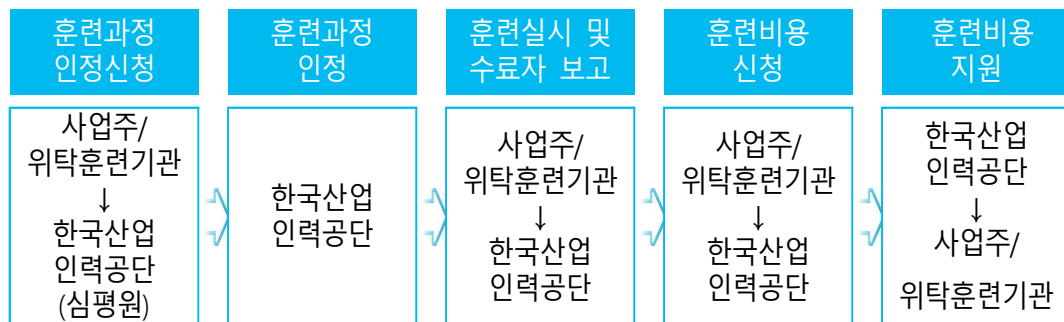
* (직업훈련 대상) 해당 사업장 소속 재직자(퇴직 예정자 포함)

2 — 지원 내용

-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 80% (우선지원 대상기업 130%, 1,000인 이상 기업 70%)수준으로 상향

3 — 신청방법 및 절차

- (신청방법)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·지사 온라인 (HRD-Net), 오프라인(방문, 우편, 팩스 등)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훈련비용 증빙서류 (훈련비 계산서 등) 제출



4 — 참고사항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」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적용함



•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: 1644-8000 (관할 지부지사로 안내)

Ⅲ.
근로자
(재직자·퇴직자)는
어떤 도움을
받을 수 있나요?





1 — 지원 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시작일의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정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인 자(타지역 거주자 포함)

2 — 지원 내용

-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의 소득요건(중위소득 100% 이하) 면제
 - * 중장년(35~69세)의 경우 중위소득 100% 이하만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에 참여 가능하나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

3 —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(고용24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)
 - 수급자격 인정(고용센터)
 - 취업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, 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(고용센터, 민간위탁기관)
 - * 취업지원 신청 시 취업취약계층(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)임을 체크



•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(또는 국번없이 1350)



1 — 지원 대상

- (재직자)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해당 지역에 주소(카드 수령지)를 두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
- (실업자) ①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실업자(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), ②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(지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까지)
- (자영업자)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신청시점 기준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기준)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-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1년간 매출 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4억원 미만인 경우
 -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

2 — 지원 내용 *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4조 및 [별표4] 관련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명당 지원한도 상향 (300만원→500만원)
- 훈련비 지원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의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

3 — 이용방법

- (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)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work24.go.kr) 신청 가능
 - *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: 고용센터 진단·상담 통해 신청가능
 -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(필요시 진단·상담 진행)

4 — 참고사항

-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추가지원 신청일 기준으로, 훈련비 지원 비율은 훈련과정 시작일 기준으로 지정기간 내인 경우 적용
- 훈련과정 → 고용24(www.work24.go.kr) 검색

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고용센터(또는 국번없이 1350)



1 — 지원 대상

- (대상) 가구별 연간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%* 이하이고,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서

*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,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%이하

**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

-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, 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), 무급휴직자,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 만족하는 자
- ②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(타지역 거주자 포함)

2 — 지원 내용

- (대부한도 확대) 1인당 월 최대 200만원(총 대부한도 2,000만원)으로 확대

*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外 : 1인당 월 최대 200만원(총 대부한도 1,000만원)

— 연 1.0% 금리(신용보증료 별도)

*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,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,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

3 — 신청방법 및 절차

- ① 대부신청서 접수(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또는 방문) → ② 담당자 확인(신청자격, 대상훈련, 훈련참여 확인) → ③ 대부자 결정 → ④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→ ⑤ 대출실행(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,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)



•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(대표번호 1588-0075)



1 — 지원 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
- *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포함

2 — 지원 내용

- 의료비, 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융자한도 확대
- * 융자종류(6종): ①의료비, ②혼례비, ③장례비, ④노부모부양비, ⑤자녀양육비, ⑥소액생계비

3 — 융자 조건

- (융자한도 확대)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,500만원 한도
- *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外 : 최대 2,000만원

의료비, 장례비	혼례비	노부모부양비	자녀양육비	소액생계비
1,000만원	1,250만원	2,000만원 ((조)부모 1인당 500만원)	2,000만원 (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원)	200만원

- (금리 및 상환) 연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- (신용보증) 융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지원
 - ▶ 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 부담

4 — 적용 시기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

5 — 신청방법 및 절차

- (신청인) 근로복지공단에 융자·보증 신청* → (공단) 융자대상 결정·통보 → (공단)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→ (신청인) 대출 신청 → (은행) 대출 실행
- * 공단(지역본부 및 지사) 방문 또는 인터넷(근로복지넷 : welfare.comwel.or.kr)

6 — 신청제한

-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,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-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금융질서 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
-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,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, 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
- 장례비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
- 외국인 및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)



•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
근로복지넷 홈페이지(welfare.comwel.or.kr)



1 — 지원 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의 재직 중인 근로자
 - *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포함

2 — 지원 내용

- (융자한도 확대) 최대 1,500만원으로 확대
 - *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外 : 최대 1,000만원

3 — 융자 세부 내용

- (대상자) 채불 사업장(폐업된 경우는 제외)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
 - *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
- (채불요건)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 채불
 - * 건설일용노동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(개별직종노임단가)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('25년 835,405원) 이상 채불
- (이자율) 연 1.5%
 - *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에 따른 신용보증료 1% 별도

4 — 신청방법 및 절차

- (신청인)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* → (공단) 융자대상 결정·통보
 → (신청인)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 → (공단)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
 → (신청인) 대출 실행
 - * 공단(지역본부 및 지사) 방문 또는 인터넷(근로복지서비스 <http://welfare.comwel.or.kr>)

5 — 신청제한

-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,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-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금융질서 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
- 외국인 및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)

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
근로복지넷 홈페이지(<http://welfare.comwel.or.kr>)

